

수해지역청원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4
----------	-----

제출일자 : 1996. 12. 10.

발의자 : 제6회 임시회

문산수해지역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수외 6인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1996년 10월 18일

나. 청원인 :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김영래, 윤우인외 600명

다. 소개일자 및 소개의원 : 1996년 10월 18일 (송규범의원)

라. 청원심사승인 : 제6회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6. 10. 30)

마.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 별첨

2. 청원요지

- 파주시 수재민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현실에 맞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고 수해피해를 가중시킨 연천댐 붕괴의 원인규명도 없어 다시금 실의에 빠져 있음.
- 수재민 일동은 (주)현대와 정부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줄 것을 요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파주시 의회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재해원인과 규명을 하는 한편 배상청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인지와 금번 재해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어떤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심사로 사료 되며,

- 수해와 관련하여 그간 다각도로 노력을 해온 파주시 의회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놓고, 첫째, 미흡한 정부의 수해복구 대책과 보상기준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강구할 것인지? 둘째, 연천댐 붕괴와 관련하여 관리회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원인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인근 시군의회의와 공조를 취할 것인지등

- 이러한 검토사항들은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현실의 벽이 두터운 만큼 매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사료되나,
- 노력의 결과보다 수재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시의회의 의연한 자세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됨.

4. 청원관계기관 방문요지 : 별 침

(연천군의회, 전곡취수장, 동두천 취수장, 파주시상수도사업소, 적성김치 가공공장)

5. 이해관계인(공무원 및 청원인)질의·답변 : 별 침

6. 심사결과 : 청원처리결과 회신문(별침)채택

7. 심사의견서 1부. 끝.

수해지역청원 심사일정 및 내용

□ 수해지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1. 구성일 : 1996년 10월 30일(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위원구성 : 7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김준수 위원	박도연 위원	유광용위원, 황의형위원 조경래위원, 이종필위원 민태승위원,

□ 심사일정

구 분	일 시	심 사 내 용	비 고
1일차	'96.11.4(월)10:00	○ 위원장 및 간사선임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심사방향 논의 ○ 자체검토	
2일차	'96.11.7(목)10:00	○ 현지확인 (상수도사업소, 적성김치가공공장)	
3일차	'96.11.13(수)14:00	○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방문	
4일차	'96.11.15(금)10:00	○ 현지확인(연천군의회, 전국 취수장, 동두천취수장방문) ○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방문	
5일차	'96.11.18(월)10:00	○ 질의·답변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	
6일차	'96.11.20(수)14:00	○ 심사기간 연장	
7일차	'96.12.10(화)	○ 심사의견서 채택	

□ 심사내용(현장방문 및 조사)

1. 상수도 사업소 및 직성김치 가공공장 방문요지

가. 상수도사업소 방문요지

(1)방문일시 : '96. 11. 7(목) 14:00

(2)방문위원 : 김준수위원장, 박도연간사, 이종필위원, 황의형위원,
조경래위원, 유광용위원, 민태승위원,

(3)상수도사업소 : 소장 이한원

(4)방문결과

【 파주시의회 주요 질문내용 】

- . 연천댐에서부터 금파취수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며, 연천
댐에서 금파취수장까지의 평상시와 금번수해시 물이동 시간은?
- . 7월 27일 강수위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간과 최고 강수위의
시간은?
- . 7월 27일 시간당 최고치 강수위와 시간은?
- . 연천댐 붕괴로 대피하라고 연락받은 시간은?

【 상수도사업소 답변내용 】

- . 연천댐에서 금파취수장까지의 거리는 50km이며, 평상시의
물의 유속은 2.5일내지 3일걸리고 금번의 경우는 약 2시간
만에 이곳까지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7월 27일 강수위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9시경이며
최고 강수위는 21시경으로 추정됨.
- . 7월 27일 시간당 최고치의 강수위는 1.2m이며,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전 12시 사이임.
- . 7월 27일 연천댐붕괴로 대피하라고 연락받은 시간은 오전
11시 20분경임.

나. 적성김치 가공공장 방문요지

- (1)방문일시 : 1996년 11월 7일(목) 15시 30분
- (2)방문위원 : 김준수위원장, 박도연간사, 조정래위원, 이종필위원,
황의형위원, 유광용위원, 민태승위원
- (3)적성김치공장 관계인 : 북파주농협 조합장 한기태, 김치공장
영업부장 황의대

(4)방문결과

【 파주시의회 주요질문내용 】

- . 7월 27일 김치가공공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간과
완전히 침수된 시간은?
- . 7월 2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한
사항은?
- . 연천댐 붕괴로 임진강 상승으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
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 북파주농협 답변내용 】

- . 7월 27일 김치가공공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11시경이며 완전히 침수된 시간은 오후 3~4시경임.
- . 7월 2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26일 13시경 공장담장에 10여m
까지 침수하기 시작하여 15시경에는 공장내 지하실(기계실,
지하식당)이 침수하였으며, 22시경에 물이 담장밖에까지
빠지기 시작하여 7월 27일 오전 9시까지 물이 공장내
완전히 빠진 상태였으나 오전 11시경부터 다시 침수하기
시작하여 오후 16시경에 완전침수됨.

- . 연천댐 붕괴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10시 30분경 물이 임진강에서 점차 도로에 차기 시작했을때 시청 산업과로 전화해서 사유를 물어 봤더니 산업과직원이 연천댐이 붕괴돼서 임진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 대피하라고 연락받아 알게 됐습.

2. 연천군의회, 전곡취수장, 동두천취수장 방문요지

가. 연천군의회, 전곡취수장 방문

- (1)방문일시 : '96년 11월 15일(금) 13시
- (2)방문위원 : 김준수위원장, 박도연간사, 유광용위원, 황의형위원, 조정래위원, 이종필위원, 민태승위원
- (3)연천군 관계인 : 연천군의회 부의장, 전문위원, 사무과장, 연천 상수도사업소장
- (4)방문결과

【파주시의회 질문요지】

- . 현대측에서 댐붕괴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지역은?
- . 7월 27일 연천댐이 붕괴된 시간은?
- . 전곡취수장과 연천댐과의 거리는?
- . 전곡 취수장에 강수위가 올라가기전의 상황과 올라오기 시작하여 취수장이 완전 침수되기까지의 시간은?
- . 7월 27일 비가 어느정도 왔는지?

【연천군의회, 상수도사업소장, 관리계장, 취수장직원 답변요지】

- . 현대측에서 댐붕괴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지역은 백이리 지역과 한탄강 유원지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

- . 7월 27일 연천댐이 붕괴된 시간은 오전 09시 10분경임.
- . 전곡취수장과 연천댐과의 수로거리는 약 4km임.
- . 전곡취수장에 7월 27일 오전 9시 이전까지는 강수위가 줄었었다가 9시 20분경에 강수위가 20분만에 5m 이상의 급상승으로 9시 30분경 완전침수됨.(취수장 당시근무자 김덕호)
- . 7월 27일은 비가 어느정도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많이 오지는 않았음.

나. 동두천 취수장

- (1)방문일시 : '96년 11월 15일(금) 10:00
- (2)방문위원 : 유광용위원, 황의형위원, 조경래위원, 이종필위원, 민태승위원
- (3)동두천시 관계인 : 동두천시의회의장, 동두천시상수도사업소장, 관계공무원 2명
- (4)방문결과

【 파주시의회 질문요지 】

- . 전곡취수장에서 동두천 취수장까지의 거리와 동두천 취수장에서 임진강 합류지점까지의 거리는?
- . 7월 27일 동두천 취수장 침수전후 상황은?

【 동두천시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내용 】

- . 전곡취수장에서 동두천 취수장까지는 약 1km이고, 동두천 취수장에서 임진강 합류지점 까지의 거리는 약 2km임.
- . 7월 27일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취수장 아래 길 바닥에 약간 물이 들어왔었으나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갑자기 순식간에 6m정도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취수장 관리사무실이 오전 10시경 완전침수됨.

3. 수문학, 토목공학 전문가등 지명한 학계인사 방문요지

(1)방문일시 : '96. 11. 13(수) 14:00, '96. 11. 15(금) 16:00

(2)방문위원 : 김준수위원장, 박도연간사

(3)중앙대학교 공과대학 : 토목공학과 전공교수 조원철 박사

(4)방문결과

수문학 전공교수, 토목공학 전문가등 지명한 학계인사들이 한결 같이 연구, 조사결과에 회의적 반응과 조사에 참여를 한다해도 5개월여의 장기간 연구 및 조사활동 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조사결과가 청원인들이 기대하는 수해가중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

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및 청원인)질문 · 답변요지

□ 청원인에 대한 질의 · 답변요지

질문)이번수해가 연천댐이 붕괴됨으로 인해 가중됐다고 진정한 것에 대해 여러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당시 상황의 참고자료가 있으면 답변 바람.

답변)매스컴을 통한 자료와 제가 직접 현지방문, 탐문, 증언, 연천군이 진행하는 모든 사항을 현재까지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확정적인 것은 가질수 없고 다만, 물증이나 심증 또는 증언등 상황으로 봐서 틀림없이 연천댐의 붕괴로 피해가 막중했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음.

질문)600여명의 청원인이 전부 세대주인지?

답변)동거인이나 관계가 있는 분들도 일부 포함됐으나 대다수 600여명이 세대주임.

질문)본 의회에 청원을 내기전 관계요로에 청원 또는 진정서를 제출한 곳과 회신받은 내용이 있다면 답변 바람.

답변)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등 보낼수 있는 곳은 다 보냈으며 회신내용중 중앙에서는 경기도로 위임해서 회신왔고 특별재해지구 같은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특별재해지역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회신이 왔고, 피해액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법상에 해당되는 내용에 준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이 왔음.

질문)청원내용에 연천댐의 부실함과 관리소홀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한 물적증거가 있는지?

답변)연천댐 설계당시 수문이 7개가 아닌 10개로 되어 있었는데 3개가 줄고 7개 수문으로 시공한점과 준공검사당시 연천군에서 댐과 옆에 막아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발견돼 그곳에 대한 지시를 했다고만 했는데 그 이후 보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이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관리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음.

질문)신한국당 당사앞에서 연좌농성을 할 때 신한국당이나 각계 기관의 반응은?

답변)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돌발적으로 본의 아니게 점거농성을 하게 돼서 사과를 드리며, 책임자이신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도지사등이 한결같이 특별재해지역까지는 선포를 못하겠지만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피해 또는 복구지원을 하겠다고 누누히 말씀하셨으나, 왔다가고 난 후에는 대답이 없었음.

질문)연천군 대책위원회와 파주시 시민대책위원회가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파주시 시민대표가 빠지게 된 특별한 사유는?

답변)특별재해지역으로 본다면 화천군, 철원군, 연천군, 파주시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움직였고 그 상황에서 연천댐으로 따진다면 연천군과 파주시는 합의하에 공조를하여 잘 진행됐는데 연천군의 리단위로 이해관계가 발생되면서 리 단위로 옛날 관례대로 피해보상 받은 것이 있어 지역마다 빠져 나가게 되고 또 파주시가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임.

질문)파주시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청원서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최소한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합해서 어떠한 보답이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수재민한테 할 도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질문)경기도의회 특별위원들중에는 대부분 문산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뽑아 선출해 주신분도 참여해서 조사를 했는데 불신하는 이유는?

답변)“어떠한 경우라도 만수위가 돼서 피해가 발생했을시는 피해 보상을 책임지겠습”하는 각서를 제출한 분명한 문서가 있는데 어떻게 천재가 됐든 인재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을 강구하지 않는등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됨.

질의)윤우인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유는?

답변)연락이 오기전에 새마을 금고에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라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

질의)파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시면서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답변)특별재해 지역에 준하는 피해보상과 수해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며 그리고 현대건설측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모든 법적대응에 이르기까지 차근 차근 준비해서 피해지역 주민과 같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고맙겠습.

□ 파주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요지

질문)연천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우선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피해가 컸으며 파주시가 근본적인 것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움. 도단위에서 판단할 사항임.

질문)의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권위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산수반이 되어야 할 것인바 집행부에서 협조해 줄 것인지?

답변)중앙에서 이미 천재 측면에서 복구계획이 작성돼서 지금까지 시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생각 됨.

질문)수해백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중인지?

답변)역사적인 교훈자료로 삼기 위해 응급복구, 항구복구의 과정을 수록하고 직접자원봉사 했던 수기, 수해를 당하신분의 수기, 사진공모등 총 망라해서 백서를 만들고자 함.

질문)수해백서에 원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견해는?

답변)원인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해봤으며 어떻게 결론을 질 것이냐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됨.

질문)수해지역 주민의 정서를 수해백서에 수록할 수 있는지?

답변)검토해 보겠음.

질문)중앙에서 천재라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천재라고 답변한 것인지?

답변)강원도, 연천등 타 지역에서도 많은비가 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판단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이 있기 까지는 천재로 본다는 소신은 변함 없음.

질문)연천댐이 붕괴돼서 파주수해피해가 가중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연천댐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구역 밖이기 때문에 조사는 연천이나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 행정구역 권한밖의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질문)현대건설측과 댐붕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대처한 일이 있는지?

답변)중앙에 건의를 했지만 우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와 직접은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관여할 성질이 못됨.

질문)연천군의 토목학회에서 원인규명이 연천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을 경우에는 파주시의 대처계획은?

답변)피해보상을 하라는 수치가 나오면 현대에 보상 청구등 조치를 하겠습.

심 사 의 건 서

- 금번 수해는 강우량 500~700mm라는 상상을 초월한 폭우가 원인이 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는 것이 중앙재해 대책본부의 최종결정 사항이어서 정부관련 부처와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 이러한 정부의 판단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히고 반증을 위한 각종자료 수집과 당시 상황 청취를 위한 현지확인과 관련기관 방문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 수문학 전공교수, 토목공학 전문가등 저명한 학계 인사들을 방문 자문을 구하고 특위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한결 같이 연구, 조사결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조사에 참여를 한다 해도 5개월여의 장기간 연구 및 조사활동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청원인들이 기대하는 수해가중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의견을 보임.
- 또한, 기술용역을 위한 예산반영 요구를 하였으나 파주시에서는 중앙재해 대책본부가 이미 자연재해로 결론지은 사안에 대하여 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결국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가능성 여부를 입증치 못하는한 자연 재해 대책법에 근거한 정부의 수해복구 기준은 달리 어찌할 수 없는 현행법상 보상기준의 한계임을 판단하여 고뇌에 찬 숙의를 거듭한 끝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여 청원인에게 불임과 같이 청원서 처리결과를 회신코자 함.

정원서 처리결과 회신

■. 정원 배경에 대하여

○. 지난 7월 26일부터 3일간 우리고장에 내린 폭우는 분산시
가지를 비롯한 임진강 수계의 주택·상가등 건물과 수천
ha의 농경지를 참혹하리만큼 초토화 시키므로서,
삶의 터전을 잃은 만여명의 수재민들은 이 정전벽력같
은 재앙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나, 각계각처로부터 줄을 이은 온정의 손길들이 수
재민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실의와 좌절에 빠진 수재민들
은 다소나마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고, 폐허속에 재기
를 위한 애처로운 노력이 시작된지 수개월여
지금은 비록 외형적이나마 거의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큰 기대를 걸었던 정부자원의 수해복구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어 수재민들은 과중한 복구부담으로 많은
부채를 걸머지게 되었고 다시금 좌절에 빠지게 되었으며,
우리고장의 수해피해를 가중시킨 연천댐 붕괴에 대한 원
인규명 한마디 없이 용두사미격으로 정부나 현대건설에
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개탄할 뿐입니다.

■. 시의회에서는

- . 정원인 여러분께서 시의회에 호소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모두는 여러분과 똑같은 안타깝고 격앙된 심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동분서주하며 노력을 하였습니다.
- . 시의회에서는 본 정원 해결을 위해 정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증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 당시 상황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임진리 상수도사업소, 적성면 김지공장, 연전군 취수장 2곳, 동두천 취수장 등을 방문하여 시각별 수위상승 기록과 목격자증언을 정취하는 한편, 연전군 의회를 방문하여 공조요청을 하였고,
관계공무원과 정원인 대표를 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조사·정취된 사항들을 기술적·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학계·기술계 권위자들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시의회 의원들의 의욕과 조사된 정황자료 만으로는 결정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에 허탈하고 승구한 마음으로 최종회신을 하게됨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청원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 먼저, 금번 수해의 근본원인과 귀책사유 규명에 대하여

- 금번 수해는 강우량 500 ~ 700mm라는 상상을 초월한 폭우가 원인이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는 것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최종 결정사항이어서 정부관련부처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 이러한 정부와 경기도의 판단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히고, 반증을 위해 학계 등 전문가들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한편, 기술용역을 위한 예산반영요구를 하였으나 시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자연재해로 결론지은 사안에 대하여 예산반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 결국,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가능성 여부를 입증지 못하는 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정부의 수해복구 기준은 달리 어찌할 수 없는 현행법상 보상기준의 한계라 하겠습니다.

0. 두번째, 연천댐 소수력 발전소 관리소홀로 인한 댐붕괴가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 시의회에서는 연천댐 붕괴가 하류지역에 미친 피해 가중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당시상황 정취를 위한 현지확인과 관련기관 방문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 수문학 전공교수, 토목공학 전문가등 저명한 학계 인사들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시의회 특위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 한결같이 연구, 조사결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조사에 참여를 한다해도 5개월여의 장기간 연구 및 조사활동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조사결과가 청원인들이 기대하는 수해가중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므로써 이부분 역시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아래,

시의원 모두는 고뇌에 찬 숙의를 거듭한 끝에 청원심사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당부드리는 말씀

- . 정원인들께서는 시의회를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시고 큰 기대를 갖고 1만여 수재민의 안타까운 정상(情狀)을 호소 하셨습니다.
- . 결국,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연천댐 붕괴원인과 수해가중정도에 대하여는 파주시 행정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나, 연천군 수재민 대책위원회와 현대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조사중에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 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수해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평온함을 되찾으시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시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수해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더욱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의연한 생활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